

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나123012(본소), 2023나213172(반소) 판결
[건물등철거 · 지상물매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23345 판결

주 문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공주시 C 대 172㎡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2㎡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9 내지 10행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을 “피고들”로 수정한다.

○ 제3면 제5 내지 6행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다른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 제3면 제17 내지 제18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된 2022. 11. 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바 없다거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으로 수정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와 D 사이에 또는 망 E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접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선 정 자 명 단

1. B(선정당사자)

2. F

3. G

끝.

